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31
------	-----

2023. 3.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3. 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태균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진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명칭은 기관의 기능을 포괄 반영하지 못하여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함.
- 그 밖의 임원의 연임기간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함(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제3조, 부칙)
- 나.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안 제7조)
- 다. 결산시기를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함(안 제1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일괄변경하고, 지침¹⁾과 관계법령²⁾에 따라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결산서 제출시기를 3월말에서 2월말로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명칭 변경 현황

-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의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998년에 “서울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됨.

1) 시장방침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공기업담당관-900, 2019.1.19.)

개선사항 : 출연기관의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개선하고, 정관 등 관련규정 개정 조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결산)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후 기관의 고유 기능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2차례의 명칭 변경을 통해 2014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을 사용하고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 명칭 변경현황 >

연 도	명 칭	변경사유
1998년	서울산업진흥재단	
2006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에서 설립한 산하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함.
2014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수출분야에 국한된 ‘통상’ 용어를 삭제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지원, 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매출 증대 지원, 콘텐츠산업 육성, 주요 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및 산업거점 활성화 등 서울시 경제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기관명칭의 변경(제명, 안 제1조, 제3조, 부칙)

-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목적(안 제1조), 적용범위(안 제3조), 다른 조례³⁾ 등에서 사용되는 기관의 명칭을 “서울산업진흥원” 에서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일괄 변경함.

3) “서울산업진흥원”을 사용하는 서울시 조례 현황

-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②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④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 ‘산업4)’이라는 용어가 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에 중점에 두는 개념인 반면, ‘경제5)’는 생산·분배·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용어임.
- 현재 창업촉진, 기업지원, 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의 미션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서울경제 상황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조직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는 있음.
- 진흥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개 광역시·도의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도 기관의 명칭에 ‘산업’ 보다는 ‘경제’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14개 광역자치단체별 진흥원 현황 >

연번	기관명(영문명)	변경 전 명칭	설립연도	변경연도
1	서울산업진흥원(SBA) (Seoul Business Agency)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998	2014
2	부산경제진흥원(BEPA)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7	2008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Gyeonggido Business & Science Accelerato)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7	2017
4	충북기업진흥원(CBS) (Chungbuk Business Agency)	충북지방기업진흥원	1997	2017
5	충청남도경제진흥원(CEPA) (Chungcheongnam-do Economic Promotion Agency)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8	2010
6	강원경제진흥원(GEPA) (Gangwon Economic Promotion Agency)	강원산업경제진흥원	1997	2017
7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BEAD) (Business and Employment Agency of Daejeon)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995	2021
8	광주경제고용진흥원(GEPA) (Gwangju Economic Promotion Agency)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8	2013
9	울산경제진흥원(UEPA) (Ul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9	2013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JBA) (Jeollabukdo Business Agency)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6	2010
11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JBA) (Jeollanamdo Business Agency)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2007	2022

4) ‘산업’은 주로 재화, 용역, 소득의 원천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의 모임
 5)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사회적 관계

12	경남투자경제진흥원(GIBA) (Gyeongnam Investment & Business Agency)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020	-
13	경북경제진흥원(GEPA) (Gyeongbuk Economic Promotion Agency)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7	2010
14	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 (Jeju Business Agency)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996	2015

※ 인천 : 경제통상진흥원(1996~2016), '16년 폐지 ⇨ (재)인천테크노파크에 기능 흡수

- 다만, 잦은 기관 명칭 변경은 시민과 기업, 해외협력기관 등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명칭 변경에 따른 기관 홍보와 간판 교체비용⁶⁾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또한,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기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진흥” 과 “중소기업 육성” 에 한정되어 존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 진흥 및 활성화” 와 “기업 성장지원” 을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u> 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 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진 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 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서울 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 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 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u> 한다.

6) 서울산업진흥원에서 BI 변경에 따른 교체 비용은 약 80,000(천원) 으로 예상함.

- 한편, 기관의 한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영문 명칭인 ‘SBA’는 브랜드 가치와 특허청 등록⁷⁾ 등을 고려해 변경 없이 사용할 계획임.
- 진흥원은 1998년 기관 설립 시 해외통상 투자유치 목적으로 SIPRO⁸⁾라는 영문을 표기하였고, 2005년 로고 변경을 통해 SBA⁹⁾를 계속 사용해오고 있음.



1998년 로고



2005년 로고



2016년 로고

- 이에 따라 기관의 한글 명칭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영문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라. 임원의 연임기간(안 제7조제3항)

- 개정안은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음.
- 임원의 연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이하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출자·출연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2016년 ‘SBA’ 단어 자체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완료

8) “서울산업진흥재단” 영문 표기 : SIPRO(SEOU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9) “서울산업진흥원” 영문 표기 : SBA(SEOUL BUSINESS AGENCY)

10) 「지방 출자·출연법」 제9조(임원)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서울시는 임원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우수 인재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 내부지침¹¹⁾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연임기간을 1년으로 단축·통일하도록 권고함(2019).
- 따라서 임원 연임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서울연구원과 장학재단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임규정을 조례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연기관 간 임원의 연임기간이 서로 상이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기간 현황 >

연번	기관명	연임기간	연번	기관명	연임기간
1	서울의료원	1회 연임 (3년 범위 내)	11	서울장학재단	연임가능 (상위법 개정 필요)
2	서울연구원	3년(지방연구원법 개정 필요)	12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년
3	서울산업진흥원	3년	13	서울시50플러스재단	1년
4	서울신용보증재단	1년	14	서울시디지털재단	1년
5	세종문화회관	1년	15	120다산콜재단	1년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년	16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1년
7	서울시복지재단	1년	17	서울관광재단	1년
8	서울문화재단	1년	18	서울기술연구원	1년
9	서울시립교향악단	1년	1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임가능(이사 1년, 감사2년)
10	서울디자인재단	1년	20	서울시미디어재단	1년

11) 시장방침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공기업담당관-900, 2019.1.19.)

개선사항 : 출연기관의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개선하고, 정관 등 관련규정 개정 조치

마. 결산서 제출시기(안 제16조)

- 개정안은 진흥원의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시기를 다음연도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는 것임.
- 이는 ‘지방 출자·출연법’¹²⁾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임.
- 다만, 조례 제정 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년간 결산서 제출시기(법령 2개월, 조례 3개월)를 달리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 바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기관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에 한정되어 존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 진흥 및 활성화”와 “기업 성장지원”을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

12) 「지방 출자·출연법」 제19조(결산)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경제 진흥 활성화” 와 “기업성장 지원” 을 추가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31
----------	--------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기관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진흥” 과 “중소기업 육성” 에 한정되어 존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 진흥 및 활성화” 와 “기업 성장지원” 을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경제 진흥 활성화” 와 “기업성장 지원” 을 추가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로 한다.

제3조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년 단위”를 “1년 단위”로 한다.

제16조 중 “3월말”을 “2월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사목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u>서울산업진흥원</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임원) ①·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3년 단위로</u>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④ (생략)</p> <p>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u>3월말까지</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u>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u>서울경제진흥원</u>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u>서울경제진흥원</u>----- ----- ----- ----- -----.</p> <p>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u>1년 단위</u>----- ----- ----- -----.</p> <p style="padding-left: 20px;">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결산서의 제출) ----- ----- ----- -----<u>2월말</u>----- -----.</p>